

	<h2 style="margin: 0;">교원 인사규정</h2>		규정번호	1-0-4
			제정일자	2008.03.01
			개정일자	2011.03.24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10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동양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 동양미래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에 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제4조 제2항으로 하며, 제4조 제3항의 교원에 관한 인사규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교원의 자격) 대학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 등으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계약제 임용, 겸임, 파견, 휴직, 복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원 또는 면직된 자를 해당 직위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직무대행) 총장이 유고 시 정관 제79조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교학처장, 산학처장, 기획처장 순에 의하여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교육훈련 등) ① 교원에 대하여 당해직무와 관련된 학식·학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행정 기관 또는 산업체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의 이수, 연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규정하는 파견에 있어서 국외에서 1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원업적평가) ① 대학의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업적평가는 교육업적·연구업적·봉사업적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계약제 임용(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근무기간 종료되어 다시 임용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는 이하 “재임용”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③ 업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절차, 부문별 평가 상한점수 및 누적점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업적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업적평가의 이의 신청) 업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실적물 인정) 교원이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SCI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 우수학술지급 논문만 실적물로 인정한다.

제 2 절 교원인사위원회

제1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정관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양미래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조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7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 및 내용 요지
4. 의결 내용
5. 기타 사항

⑤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겸임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업적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3. 연구실적물에 대한 정성적 심사
- 4.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심의에 있어서 해당자의 대학에서의 제반 활동 등을 참작하여 정성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한 후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임 용

제 1 절 임용기준

제16조(임용원칙)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등은 제24조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제25조에 따라 임용한다.

③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4조제3호의 근무조건은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임용에 대한 근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직위의 임용일자로 하며, 근무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 시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근무기간 만료일로 한다.

⑤ 교원을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할 때는 업적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재임용, 승진임용 별로 업적평가의 반영을 다르게 한다.

⑥ 제2항의 각 임용별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임용시기) ① 신규임용, 재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용 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은 9월1일 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은 임용장, 임용통지서 또는 위촉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의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입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제18조(정년보장교원의 심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정관 제39조의5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0조(경력연수의 환산) 교원의 경력연수의 환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육경력과 연구실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교육경력연수와 연구실적연수는 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동일기간 내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기관에서의 경력만을 계산한다.

제2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 ② 제1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신규 임용

제22조(신규임용 방법)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신규임용 절차) ①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② 제1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

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인 자로 한다.

③ 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 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제 임용)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48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6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대학이 요구하는 업적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실적,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

제 3 절 재임용

제25조(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임용)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 한다.

1. 교 수 :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제26조(재임용 등)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에 의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재임용 심사 및 절차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해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대

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 절 승진 임용

제27조(승진 심사 등) ① 전임교원의 승진은 제28조의 규정이 정하는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한 자로서 업적 및 성과에 대한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9조에 의한 징계 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승진 소요연수) 전임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해직급에서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6년 이상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이상
3.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 2년 이상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 12개월
 - 나. 감봉 : 6개월
 - 다. 견책 : 3개월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병역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2. 업무상 재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면서 발생한 휴직

제 3 장 복 무

제30조(복무) ① 교원은 교육, 연구, 봉사 및 대학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관 또는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직 중 교원평가 등) ① 교원은 재직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포함하여 대학의 각종 평가규칙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해당교원의 인사, 보수, 상벌에 적용한다.

제32조(재직 중 학위과정 제한) 전임교원의 학위과정 입학은 신규임용 후 2년 이내에는 불허하며 학위과정 입학가능 정원은 학위과정 입학예정자와 학위과정 재학 중인 전임교원을 합하여 학부 전임교원의 2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의 수료자는 학위과정 재학 중인 전임교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3조(보직 수행 등) ① 총장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의 현재 직무 이외에 대학의 기구조직표에 의한 보직 및 타 직무를 임명, 위촉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총장 및 사무처장의 보직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② 부총장 및 보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직은 제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학교운영상 필요할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직원(임용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원)을 보할 수 있다.

제34조(겸직제한) ① 대학의 전임교원은 직무 이외의 타 조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직책을 담당함으로써 인하여 능률의 저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학의 이익과 반하는 업무 또는 대학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타업무는 겸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기관의 업무에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파견근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교육, 연구, 학술진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한다.

④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해외여행을 원할 때는 출발 14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해외여행허가원을 제출하여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강의기간 중의 공무로 인한 해외여행 기간은 학기별 통산 14일 이내로 하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당해 교원의 해외여행은 대학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해외여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근무장소 이외의 연수) 교원은 필요시 방학 중 근무장소를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병가) ① 교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소요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60일까지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4 장 신분 보장

제39조(신분보장)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정관 또는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등) 교원의 휴직은 정관 제41조 및 정관 제42조에 의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의 교원은 휴직을 할 수 없다.

제41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 만료 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한 불량한 자 : 3월 이내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확정 판결 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
4.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 교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장 징 계

제43조(징계사유) ① 교원의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무원 징계사유와 정관 및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② 징계위원회는 정관에 의거 구성하며 법인에서 개최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파면 및 해임,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그 직을 박탈한다.
2.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
5.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6 장 보 칙

제45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법령의 준용 등)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 관련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전임교원인사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자로 폐기한다.
② 종전 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3) **(승진 소요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승진임용대상자(종전규정에 의하여 10월 1일자로 승진한 자)의 최초 승진임용심사에 한하여 승진소요연수가 1월이 부족한 때에는 제28조에 불구하고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연구실적물 인정에 대한 유예조치)** 재임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제10조의 연구실적물 인정은 2011년 3월 1일자 재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